



주목할 만한 내용:

1. 조세관리

- 2030년까지 세제개선 전략 승인하는 결정서 발표

2. 법인소득세

- 위치를 이전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 나무재배 비용
- 주문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기타 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결정

3. 간접세 및 외국인 계약자세

- 비관세 지역안에서 영업하는 수출가공기업 ("EPE")에 대한 FCWT
- 베트남으로 파견된 외국인 주재원의 급여 상환

4.1. 노동 및 사회 보험

- 제08/2022/QD-TTG호 결정에 따라 주택 임대료 지원금 받은 근로자리스트 확인 안내
- 제08/2022/QD-TTG호 결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주택 임대료 지원정책 수행에 대한 지침

4.2. 개인소득세 및 출입국

-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PIT 면제

5. 무역 및 관세

- 2030년까지 수출입 전략
- 칼라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계속 적용
- 수출가공기업 ("EPE")에 위탁가공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불가
- AHTN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2017에 따른 HS 코드는 C/O form D에만 2023년2월28일까지 사용됨
- 수출 제조가공품에 대한 관세부과 설명



조세관리



기타

2030년까지 세제개선 전략 승인하는 결정서 발표

2022년 4월 23일, 베트남 총리가 2030년까지 세제개선 전략 승인하는 제508/QĐ-TTg호 결정을 발표하였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i) 조세정책 개선, (ii) 조세행정 개선에 관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 의무 및 해결책을 포함한다. 특히, 세제 정책 개선을 위한 해결책의 경우 전략은 주요 조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 **부가가치세 (VAT):** 비과세 상품 및 5% 세율 적용 상품 & 서비스의 항목을 축소하므로 과세기반을 확대시킴;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추구함; 세율 인상 추진 로드맵을 연구함.
- **특별소비세 (SCT):** 과세 대상을 연구 및 추가함; 담배, 맥주, 주류 제품에 대한 세율 인상 추진 로드맵을 작성함;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례세율 및 절대세율의 조합과세를 위한 연구, 실행함.

- **수출입관세:** 수입관세표를 간소화를 위해 세율수를 감소함 (즉, 2025년까지 25개 및 2030년까지 20개의 세율수로 감소); 현장수출입에 관한 규정을 연구, 개정함
- **법인소득세 (CIT):**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조세 감면 혜택의 개정, 폐지함; 사회정책 및 조세감면정책간의 통합을 최소화함; 외국인 투자의 유치 정책에 대한 초점을 양에서 질로 조정하고 투자장려 필요한 주요 산업, 분야 및 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
- **개인소득세 (PIT):** 세금결산 간단화를 위해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각 과세대상 소득의 본질에 적합한 세율수 및 세율기준을 조정

(2020년 4월 23일 베트남 총리의 제508/QĐ-TTg 호 결정서)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지침문서

위치를 이전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지역(산업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가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계속 세제혜택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남은 기간동안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확장투자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5월 9일 제1471/CTBNI-TTHT OL)

기업은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당 투자 프로젝트를 인센티브 적용된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을 경우 이전한 후 인센티브를 적용된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로 인한 소득은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4월 22일 제1288/CTBNI-TTHT 호 OL)

나무재배 비용

기업은 유관기관에 의해 승인한 세부계획에 따라 당사의 공장 주변에 나무 재배를 위해 벤더와 서비스 계약을 맺는다. 이 활동이 VAT 과세 대상이며 기업의 생산.사업 활동과 관련되고 충분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면 해당 매입 VAT가 공제되고 해당 지출비용이 CIT 목적으로 공제될 수 있다.

(Hai Duong 세무국의 2022년 4월 18일 제3284/CTHDU-TTHT 호 OL)

주문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기업은 주문이 없기 때문에 생산 중단 되어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절의 생산으로 인해 9개월 미만으로 생산 중단 또는 수리/이전/주기적 유지보수의 목적으로 12개월 미만으로 생산 중단의 경우 제외):

- 기업은 생산 중단 기간 동안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해야 한다.
- 해당 기간의 감가상각비용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상 공제되지 않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5월 09일 제1475/CTBNI-TTHT 호 OL)

기타 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결정

기업은 폐기물 소각으로 에너지 생산 투자프로젝 조건에 따라 CIT 인센티브를 적용된 폐기물 발전소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당 프로젝트가 투자 및 건설단계 중이며 아직 가동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업이 장비기계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으로 기부금을 받으면 해당 기부금이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며 상기 산업분야 조건에 따른 CIT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타 소득은 투자 프로젝트 완료후 (가동 시작) 발생되고 인센티브를 적용된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된 분야에 제품의 폐자재 및 폐기물 청산으로 인한 수익, 이러한 분야의 매출 및 비용과 직접 관련된 환율 차이, 무기한 은행 예금 이자 및 제78/2014/TT-BTC호 시행규칙의 제18.4조에 의해 직접 관련 기타 소득을 포함한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4월 26일 제1354/CTBNI-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및 외국인 계약자세



지침문서

비관세 지역안에서 영업하는 수출가공기업 ("EPE")에 대한 FCWT

수출가공기업 (비관세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외국인 공급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공급업체의 해당 소득은 FCWT 부과된다.

기업이 해외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CIT를 징수하고 외국인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EPE의 경우 VAT가 부과되지 않음)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5월 5일 제7146/CTBDU-TTHT 호 OL)

베트남으로 파견된 외국인 주재원의 급여 상황

해외 회사가 베트남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외국인 주재원을 파견하고 양쪽 당사자가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 베트남 회사가 외국인 주재원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다;
- 외국인 주재원에 대한 모든 급여, 수당 및 기타 지원금은 해외 회사가 주재원의 해외 은행계좌로 지급한 후 해당 베트남 회사에게 청구한다 (그 외에 가타 지급이 없음);
- 또한 외국인 주재원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동안 베트남 회사의 지도, 감독, 통제하에 일하는 뿐이다.

이경우에 해외 회사의 베트남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후 환불 받은 금액은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FCWT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외 회사가 베트남 회사를 대신하여 주재원에게 지급한 비용의 상환분 이외에 주재원 배정으로 인해 다른 소득을 받을 경우 해당소득이 베트남 FCWT 부과된다. 베트남 회사가 FCWT를 징수하고 해외회사를 대신하여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5월 12일 제1503/CTBNI-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노동 및 사회 보험



지침 문서

제08/2022/QD-TTG호 결정에 따라 주택 임대료 지원금 받은 근로자리스트 확인 안내

1. 단체의 제02호, 제03호 Form (제08/2022/QD-TTG호 결정과 첨부됨)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02일 이내에 접수 책임자는 제02호, 제03호 Form을 사회보험에 참여한 근로자목록과 비교한다.

비고: 제02호 Form은 월별 또는 2개월, 3개월 개월마다 확인된다.

2. 2개 이상의 근로계약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제02호 및 제03호 Form은 의무적인 사회보험에 참여한 첫 단체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각 근로자는 01개월에 한 번만 지원되며 지원기간이 03개월을 초과하지 않다.

3. 근로자가 무급휴가, 질병및 출산 휴가, 근로계약을 일시적 중단 등의 경우 의무적인 사회보험에 참여한 것을 확인이 안된다.

4. 서류 접수 기한은 2022년 8월 15일까지이다.

5. 전자신고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동안: 제02호, 제03호 양식은 사회보험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호치민 사회보험국의 2022년 4월 29일 제 2219/BHXXH-QLT호 OL 및 제2220/BHXXH-QLT호 OL 및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2022년 4월27일 제 1426/QD-UBND호 결정)

제08/2022/QD-TTG호 결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주택 임대료 지원정책 수행에 대한 지침

제08/2022/QD-TTG호 결정에 따른 주택 임대료 지원 패키지는 1,000,000 VND/월 및 500,000 VND/월 2가지의 수준이 있다.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근로자에게는 1,000,000 VND/월 수준이 적용된다.
- 2022년 4월 1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500,000 VND 수준이 적용된다.

유효한 워크퍼밋을 소유하고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택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호치민 노동보훈사회부의 2022년 5월 10일 제16741/SLDTBXH-VLATLD호 지침 및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2022년5월10일 제1535/QD-UBND호 결정)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및 출입국



지침 문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PIT 면제

회사가 노동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공휴일 근무, 야간 근무 및 초과 근무에 대하여 통상의 주간 근무 급여보다 더 지급한 부분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5월 13일 제21884/CTH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2030년까지 수출입 전략

정부는 2021년 4월 19일에 2030년까지 수출입 전략을 통과하는 제 493/QD-TTg호 결정을 발표하였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략 방향: 목표 간의 조화로운 기반으로 경제 - 기술, 과학 - 기술 인프라의 개발 및 산업 - 지역 개발 계획에 적합하는 수출입 전략을 개발한다.

- 목적: 수출입을 촉진하고 무역 균형을 유지하며 무역흑자, 제품과 시장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략적 무역 지역에 대한 수출입 비율을 상승한다.

- 수출입 방향: 지속 발전, 수출 물품의 심층 구조조정, 산업화 및 현대화 촉진, 개발 기간을 2021-2025년과 2026-2030년의 2 단계를 분류되어 구체적인 경로로 제품 그룹을 개발; 수입성장을 조정; 현대 기계설비 및 선진 생산라인의 수입비중 증가; 시장 다양화, 잠재적인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함 등

- 전략실행 솔루션: 특징적인 각 목표, 시장 및 기간에 대하여 다양하고 자세한 솔루션을 적절히 활용함

-(국무총리의 2022년 4월 19일 제493/QD-TTg호 결정)

칼라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계속 적용

산업통상부는 제1283/QD-BCT호 결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평면압연 칼라강판의 일부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부의 2022년 5월 5일 제843/QD-BCT호 결정)

지침 문서

수출가공기업 ("EPE")에 위탁가공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불가

Non- EPE가 임가공 위탁을 위해 수입 자재 또는 수입 자재로 생산된 반제품을 비관세 지역에 위치하는 다른 기업에 납품할 경우 완제품을 다시 국내로 재수입할 때 수입 관세가 부과한다.

상기 비관세지역에서 생산 또는 임가공 위탁된 완제품을 재수입할 때 수입 관세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완제품이 재수입된 후 해외로 수출될 경우 세금 환급 제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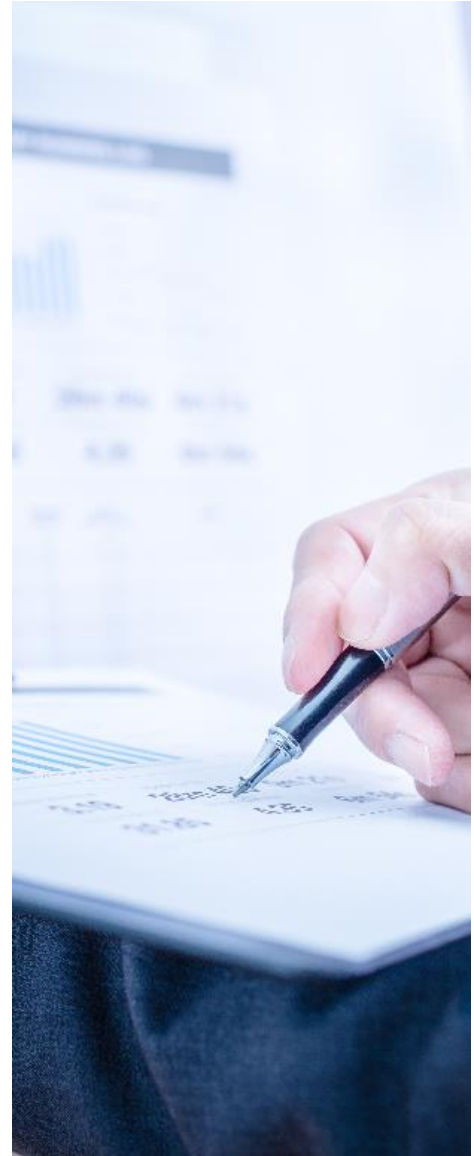
(관세총국의 2022년 4월 19일 제1346/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cont.)

AHTN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2017에 따른 HS 코드는 C/O form D에만 2023년2월28일까지 사용됨

관세총국의 발표에 따라 ATIGA 회원국은 AHTN 2017에 따른 HS 코드를 사용하는 C/O form D (하드카피, 전자 및 원산지 자가인증 포함) 2023년2월28일까지 허용하기로 동의한다. 그 이후 AHTN 2022에 따른 HS 코드를 사용하는 C/O만 허용된다.

관세총국의 2022년 5월 1일부터 발행된 C/O form D에 대한 기타 지침:

- C/O form D상 **"after 03 days of export date - 수출일로 부터 03일후"** 대신에 **"after the export date - 수출일 후"**로 발행된 경우 3번의 칸에 **"Issued Retroactively"**(소급 발행)을 표기해야 한다

- C/O 뒷면의 열 (1) 및 열(2)에서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 - 아세안 산업 협력 계획 하에 특혜 제공"**라는 문구 및 AICO에 대한 지침을 지운다

- **"Original CO (form D)"**를 **"Original Proof(s) of Origin"**으로 변경한다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 수입국 공인 서명자 서명"**를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Country - 수입국 관세청 공인 서명자 서명"**로 변경한다

- C/O Form D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포함하며 **"Carbon copy"** 규정을 폐지하여 A4 용지에 인쇄된 C/O를 허용한다.

(관세총국의 2022년 5월 4일 제1449/TCHQ-GSQL호 OL 및 2022년 4월 25일 제1568/TCHQ-GSQL호 OL)

수출 제조.가공품에 대한 관세부과 설명

관세총국은 Dong Nai 관세국의 여러 문의를 회신하였고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업이 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한 후 (수입 관세를 납부하였음) 직접 생산하지 않고 가공위탁을 위해 일부의 수입 원자재를 국내 기업에 납품한 후 반제품을 받고 완제품의 생산을 완료한 후 해외 또는 비관세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 환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 부터 원자재를 구매하면서 해외 기업이 지정한 수출가공기업, 보세창고 (국내수입)로 부터 원자재를 받는다. 해당 원자재는 국내 기업의 수출품 생산 가공을 위해 수입되므로 제134/2016/ND-CP호 시행령제 10조 및 12조에 따라 수입 관세가 면제되었으면 모드 A11 (사업용 수입) 또는 모드 A12 (제조용 수입) 로 신고하고 해당 수입관세,VAT 및 기타 세금을 (부과될 경우)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2년 4월 25일 제 1459/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2 Deloitte Vietnam Tax Advisory Company Limited